

[불법소프트웨어단속] 고가의 프로그램 불법사용 단속 사안,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

배상소송 -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

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



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

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나. 수사기관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 단속을 한 결과, 피고 회사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2012. 8. 18.경 UGNX 4.0 프로그램 1개, 2014. 4. 10.경 UGNX 8.x 프로그램 1개, 2014. 4. 29.경 UGNX 8.x 프로그램 1개가 각 권한 없이 다운로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¹⁾(이하 위 각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제1차 범행', '제2차 범행', '제3차 범행'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① 피고 회사, B은 2015. 8. 25.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 C가 개인적으로 이직을 준비하며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인 피고 B은 프로그램 설치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② 이후 피고 C는 제2, 3차 범행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권법위반죄로 이 법원 2016 고약578호로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²⁾,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권리자 청구금액 -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총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

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총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개발팀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불법 복제 여부를 감독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제1차 범행, 피고 C의 제2, 3차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판결요지 -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이 피고 회사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직원들의 개인적 범행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 다.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피고 회사의 업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권리자 주장 -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총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든 모듈이 포함된 풀 패키지 버전을 복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전체 모듈(4.0 버전 48개, 8.x 버전 52개)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5,374,474,001원(= 4.0 버전 1,688,753,803원 × 1개 + 8.x 버전 1,842,860,099원 × 2개), 또는 적어도 주요 모듈 24개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063,308,654원(= 354,436,218원 × 3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위 손해액에 대한 일부 청구로써 피고 회사, B에 대하여는 300,0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는 200,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판결요지 -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주장 배척

그러나 한편 갑 제7 내지 11호증, 을나 제2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피고 C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보호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크랙 프로그램)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모든 모듈로 구성된 버전을 복제하기는 하였으나, 모든 모듈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 패키지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는 상당한 고가이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세부 모듈이 모여서 모듈을 구성하고 모듈이 모여서 하나의 버전을 구성하는데, 통상 프로그램 구매자는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구매 및 사용하는 점, ④ 원고의 국내 판매대리점들도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 모듈 및 그 모듈로 구성된 버전을 판매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주요 24개 모듈은 원고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이용률이 높은 모듈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가 위 24개 모듈 모두를 업무에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모든 모듈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격 또는 주요 24개 모듈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격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결정

2)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이 수십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필요한 특정 모듈에 대하여만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모든 모듈에 관한 라이선스 보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크랙 프로그램의 특성만을 이유로 모든 모듈 내지 주요 모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면 손해액이 지나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점, ② 따라서 침해자의 사용가능성만을 이유로 손해액을 산정함은 부당하고, 침해자의 업무 내용과 밀접한 모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한데,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 중 피고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피고 회사는 12번 모듈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인 점, ③ 12번 모듈의 라이선스 가격은 18,991,236원이고, 유지보수비용은 3,988,639원인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했다거나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은 다만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 C는 회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관하여 UGNX 8.x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 제2, 3차 범행으로 인해 사적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그밖에 원고의 UGNX 프로그램 저작권이 침해된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다른 법원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인정한 손해액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총 손해액을 60,000,000원(= 20,000,000원 × 3개)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

기술법무, 저작권, 영업비밀,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